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2. . . (제 회)	

소 금 산 업 진 흥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조승환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물안전과를 2023년 2월 28일자로 폐지하면서 수산물안전과에서 수행하던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업무를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및 「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이 각각 개정(대통령령 제33088호, 2022. 12. 20, 공포·시행, 해양수산부령 제574호, 2022. 12. 20,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추어 이 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장관 권한으로 이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 중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과 천일염 인증기관의 지정 등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 이전함으로써, 소금산업 진흥 관련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24호, 제25호, 제28호, 제29호, 제34호 및 제35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7호 및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3.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

37. 법 제57조제5호·제6호에 따른 청문

38. 법 제66조제1항제2호·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(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)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권한의 위임) ①·② (생략)	제15조(권한의 위임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변경·시행·통보	<삭 제>
2. 법 제6조에 따른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	<삭 제>
3.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	<삭 제>
4. 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, 교육훈련기관의 지정·지정취소·지원	<삭 제>
5. 법 제9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·지정취소·지원	<삭 제>
6. 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, 비용의 지원	<삭 제>
7. 법 제11조에 따른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의 촉진·지원, 소금연구센터 설치·운영	<삭 제>

8. <u>법 제12조에 따른 소금의 해외진출 촉진 · 지원 및 국제규격화 추진</u>	<u><삭 제></u>
9. <u>법 제13조에 따른 단체의 설립 인가, 지원</u>	<u><삭 제></u>
10. <u>법 제14조에 따른 염전, 제조시설, 포장설비 등의 현대화에 필요한 시책 수립 · 시행, 비용의 지원</u>	<u><삭 제></u>
11. <u>법 제15조에 따른 소금 전시회의 개최 · 운영, 홍보관 또는 교육관에 대한 지원</u>	<u><삭 제></u>
12. <u>법 제15조의2에 따른 전통생산방식의 보전 · 계승 활동에 대한 지원</u>	<u><삭 제></u>
13. <u>법 제16조에 따른 소금산지 종합처리장의 설치 · 운영 · 위탁 · 지원</u>	<u><삭 제></u>
14. <u>법 제17조에 따른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 · 운영 · 위탁 · 지원, 소금의 전자거래 활성화 추진</u>	<u><삭 제></u>
15. <u>법 제18조에 따른 표준규격품과 우수천일염인증품의 우선구매 요청, 사용 촉진 시책의 수립 · 시행, 비용의 지원</u>	<u><삭 제></u>

16. <u>법 제19조에 따른 상생협력 사업의 실시 지원</u>	<u><삭 제></u>
17. <u>법 제20조에 따른 컨설팅 실시 기관의 지정 및 지원</u>	<u><삭 제></u>
18. <u>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의 고시, 안전성 조사의 실시·위탁,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요청</u>	<u><삭 제></u>
19. <u>법 제29조에 따른 식용천일염 생산금지해역의 지정·고시 및 지정해제</u>	<u><삭 제></u>
20. <u>법 제30조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의 수립·시행·통보 및 시행을 위한 조치 요청</u>	<u><삭 제></u>
21. <u>법 제32조에 따른 표준모델의 개발·보급, 생산공정의 표준화 및 보급</u>	<u><삭 제></u>
22. <u>법 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,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</u>	<u><삭 제></u>
23. <u>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검사, 품질검사기관의 지정, 검사실적 보고의 접수 및 자체규정 승인</u>	23. <u>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</u>
24. <u>법 제36조에 따른 품질검사 기관의 지정취소 및 검사업무의 정지</u>	<u><삭 제></u>

25. <u>법 제38조에 따른 지리적표 시의 등록제도 실시</u>	<u><삭 제></u>
26. · 27. (생 략)	26. · 27. (현행과 같음)
28. <u>법 제43조에 따른 천일염인 증기관의 지정 및 경비 지원</u>	<u><삭 제></u>
29. <u>법 제44조에 따른 천일염인 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 지</u>	<u><삭 제></u>
30. ~ 33. (생 략)	30. ~ 33. (현행과 같음)
34. <u>법 제52조에 따른 정보 이용 의 협조 요청,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요청</u>	<u><삭 제></u>
35. <u>법 제5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, 출입 · 조사 · 점검 · 검사 · 수거(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권 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 다)</u>	<u><삭 제></u>
36. (생 략)	36. (현행과 같음)
37. <u>법 제57조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문</u>	37. <u>법 제57조제5호 · 제6호에--</u> -----
38. <u>법 제66조제1항제2호 · 제3 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· 징수</u>	38. <u>법 제66조제1항제2호 · 제3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· 징 수(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 항으로 한정한다)</u>

④ (생 략)

④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682